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98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김도읍・김예지・장동혁

박정훈 • 구자근 • 정점식

박성훈 • 조배숙 • 조지연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 항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세출 항목에 추가함.

법률 제 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 장안정기여금

제6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 공교통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 력 및 그 외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및 세출) ①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 설>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시장안정기여금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항공안전법」, 「항공사업 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드론 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사업 지원 에 필요한 경비 <신 설>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
	원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사
	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u>5</u> . (생 략)	<u>7</u> .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